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3호서식] <개정 2020. 2. 20.>

[ ]가축분뇨관련영업 / [ ]처리시설설계·시공업 [ ] 휴 업 / [ ] 폐 업 / [ ] 재개업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

신고인	상호(명칭)			
	사업자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)		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	주소 (전화번호:)			
신고내용	사업장 소재지 (전화번호:)			
	허가(등록)업종		허가(등록)번호	제 호
	[ ] 휴 업 [ ] 폐 업 일자 [ ] 재개업	년 월 일	재개업 예정일자 (휴업인 경우)	년 월 일
	[ ] 휴 업 [ ] 폐 업 사유 (구체적으로)			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	수수료
	1.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(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유서(분실·훼손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합니다)	없 음

유 의 사 항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제출된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.

처 리 절 차
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재	→	통지
신고인		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민원실		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가축분뇨 담당부서		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가축분뇨 담당부서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